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-182호

「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(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000호, 2021.0.0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.

> 2021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

「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/1발시업 운영규정」 훈령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·체계적 추진 및 운영을 위한 범부처 공통규범인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제정 '20.6.9., 시행 '21.1.1)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변경사항을 훈령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 개정 내용

<「혁신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반영>

- **상위법**(「혁신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) **변경사항 반영**(안 제2조, 제3조, 제13조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, 제27조, 제28조, 제29조, 제31조, 제32조)
- O '실시', '기술실시계약', '기술료' 등 관련 용어 정의 반영(안 제2조)
 - 「혁신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용어로 변경하여 명시
- 혁신법에 따른 **전문기관의 업무 위탁·대행** 사항 명시(안 제8조, 제22조)
 - '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'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되, 혁신법에 따른 사업단의 전문기관 업무 위탁 또는 대행
- 연구개발기간을 **단계**로 **구분**하여 수행·평가(안 제24조)
 - 현행 연차평가 대신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·평가

<변경 사항>

- 사업단 임무에 **신규과제평가** 명시(안 제6조)
 - '주관연구기관과의 과제협약을 '신규과제평가 및 과제협약으로 변경
- O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**운영위원회 위원 변경**(안 제9조)
 - 당연직 위원 중 사업단장을 사업단 실무 총괄 담당인 사무국장으로 변경
 - * 사업단장의 사업단 최고 의사결정기구(이사회) 이사장과 운영위원 겸직 방지
- 평가결과와 선정결과 구분(안 제21조)
 - '평가에 따라 선정된 과제'를 '평가결과'로 변경
- 연차·단계·최종 보고서 제출기한 구분하여 명시(안 제26조)
 - 연구개발과제 수행평가가 단계로 구분됨에 따라 연차(연도별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까지), 단계(각 단계종료일 45일 전)로 구분하여 명시
 - 평가용 최종보고서는 과제수행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, 보완완료된 최종보고서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
- **사용실적 보고 기한 변경**(안 제27조)
 - '수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'에서 '수행기간 당해연도 종료일 이내'로 변경
 - 단계가 종료되는 경우 정산을 위해 각 단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

<신설 사항>

- **회계법인의 연구개발비 집행점검 명시**(안 제27조)
 - 단계평가 신설에 따른 회계법인의 상시모니터링 실시 명시
- 연구개발성과 활용촉진 방안 마련(안 제28조)
 - 연구개발과제의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기간 명시
 - 종료된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연 구개발성과 활용실적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
- 연구개발과제 **제재부가금 국고 납입 기관** 명시(안 제31조)
 - 제재부가금은 총괄부처에서 국고에 납입
- 사업단 **하위 지침** 및 **기준 제정 근거** 마련(안 제37조)
 -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총괄부처 승인 후 하위 지침 및 기준 제정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- 1) 전자우편(이메일): choideuk@korea.kr
- 2) 주소 : (30110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
- 3) 팩스: 044-868-0219
- 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(전화: 044-201-245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(www.mafra.go.kr, 국민소통→법령정보→입법·행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

제정 2020. 9.14.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72호 일부개정 2021.00.00.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000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1조,「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」 제6조,「농촌진흥법」제7조에 의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(이하 "사업단"이라 한다)" 이란 스마트팜다부 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 해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제10 조,「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제9조,「농촌진흥청 농업과 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제6조 등에 의거,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단을 말한다.
- 2. "주무부처"란 농림축산식품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농촌진흥청 등 3개 부·청을 말한다.
- 3. "총괄부처"란 주무부처를 대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협조를 구하는 등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말한다.
- 4. "전문기관"이란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(이하 "혁신법 시행령"이라 한다) 제49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·관리

- · 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「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」에 따라 설립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.
- 5. "주관연구개발기관"이란 사업에 속한 연구과제에 대한 수행책임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.
- 6. "실시"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(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양도(기술이전을 포함한다),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.
- 7. "사업단장"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·임명된 단장을 말한다.
- 8. "이사회"란 재단법인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의 이사회를 말한다.
- 9. "기술실시계약"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 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, 기술료,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한다.
- 10. "기술료"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(연구개발성과를 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 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.
- **제4조(기본운영방침)**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농림축산식품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농촌진흥청 등 3개 부·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며, 주요 사안에 대해서 주무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.
 - 2. 스마트팜 융합·원천기술 개발·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업 구현

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.

- 3.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재단법인으로 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한다.
- 제5조(사업기간) 사업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주무부처는 사업 운영상 조기성과 달성 등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면 기간을 단축,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
제2장 사업의 조직과 기능

- 제6조(사업단) ① 사업단은 「민법」제32조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으로 한다.
 - ② 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사업의 단계별 목표·성과지표 설정, 신규과제 기획, 과제 평가기준 마련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계획 검토·보완, 기술동향조사 등 연구개발 계획 수립
 - 2. 신규과제 평가 및 과제협약
 - 3. 과제 결과로 얻어진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·처분의 대리 또는 신탁관리를 통한 과제 성과의 이전·활용 촉진
 - 4.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평가, 진도관리 및 연구비 정산
 - 5.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·운영
 - 6. 스마트팜 관련 정책 연계 사업 추진
 - 7. 사업성과의 대국민 홍보
 - 8.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

- ③ 사업단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, 사업 단장(이사장 겸직 가능), 주무부처 국장, 전문기관 본부장, 민간위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④ 사업단의 소재지, 수행사업, 재산 및 회계, 임직원 임면,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.

제7조(주무부처) ①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사업단 설립에 관한 사항
- 2.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(안)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사업비 지급 및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
- 4. 제9조에 따른 우영위원회 및 제14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·우영에 관한 사항
- ② 총괄부처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 가 혐의해야 한다.
- 제8조(전문기관) ① 주무부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사업단과의 총괄협약, 사업단의 평가 및 예산 관리(정산) 등 주무부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사업단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
 - 2.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
 - 3. 사업단의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사업단 총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
 - 5. 사업단 출연금 지급, 정산,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
 - 6. 사업단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정밀검증

- 7.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사항
- 8. 연구과제의 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 또는 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이의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④ 전문기관은 사업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할 수 있다.
- 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주무부처는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 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 - 1. 당연직 5인(주무부처 담당과장, 사무국장 및 전문기관 사업관리 부서의 장)
 - 2. 민간위원 6인 내외(주무부처에서 각각 2인씩 추천)
 -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 - 1.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사업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
 - 3.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침 및 기준 심의에 관한 사항
 - 4.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 - 5.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·제도 개선, 정책 제안, 관련 연구개발사업의

조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

- 6. 기타 사업단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
- ④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⑤ 위원장은 주무부처 담당과장 중에 호선하여 정하며,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.
- ⑥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위임시켜 의결권을 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⑦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.
- ⑧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에게 목적과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사업단장)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1. 사업단 조직의 구성, 운영,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2.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(안) 수립에 관한 사항
- 4.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, 공고, 선정, 협약, 평가, 진도관리, 정산, 기술료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관한 사항
- 5.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·보고에 관한 사항
- 6.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·보급·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7.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·분석·활용에 관한 사항

- 8. 기타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
- ② 사업단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11조에 따른 사무국과 제12조에 따른 자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
- 제11조(사업단 조직 구성) ① 사업단장은 기본적인 행정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되, 하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.
 - ② 사무국장은 사업단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다.
 - 1. 사업단 예산관리 등 사업단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
 - 2.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, 평가, 진도관리, 정산 등에 관한 행정 업무
 - 3. 그 외, 단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
 - ③ 사무국장 및 하부 조직의 상세 기능은 사업단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.
 - ④ 사업단의 인력 규모는 20명 내외로 구성하되,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제12조(자문위원회) 사업단장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술 또는 정책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3장 사업단장 선정·평가 등 사업단 관리

제13조(사업단장의 선정) ① 사업단장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2. 접수 마감일 기준 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
- 3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- 4.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
- 5.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
- 6.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
- 7. 기타 주무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에서 자격 조건으로 정한 자
- ② 사업단장 선정은 별표 1에 따른다.
- ③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제1차 추천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5명이내의 제2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.
- ④ 제14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제2차 추천위원회는 제2차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.
- ⑤ 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·의결하고 총괄부처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임명한다.
- 제14조(사업단장 추천위원회) ①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 단장 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
 - ② 제1차 추천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 - 1. 당연직 위원 3인(주무부처 담당 과장)
 - 2. 민간위원 4인 내외
 - ③ 제2차 추천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 - 1. 당연직 위원 3인(주무부처 담당 과장)
 - 2. 민간위원 4인 내외
 - ④ 제1차와 제2차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, 주무부처에서 추천한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-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⑥ 추천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사업단장의 근무조건)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·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.
 -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「공직자윤리법」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.
 - ③ 사업단장은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의 참여 또는 수행을 중지해야 한다.
 - ④ 사업단장의 보수(성과급 포함)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 - ⑤ 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, 제18조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전문기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사업단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, 이사회는 재계약이나 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 - ⑥ 이사회는 제5항에 단서에 따라 사업단장의 연임을 불허함에 있어서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 - ⑦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3조 및 제14조를 따르고,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제16조(사업단 평가) ① 사업단장은 매년 1분기 이내에 사업단 자체평가를

실시하고, 그 결과를 전문기관과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전문기관의 중간평가가 실시된 연도는 사업단 자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.

- ② 전문기관은 사업단에 대한 중간평가(사업 3년차 및 6년차)와 최종평가 (사업종료 다음 해)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총괄부처에 보고하고, 사업단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 3에 따른다.

제17조(사업단장의 해임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단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, 행정절차에 따라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.

- 1. 전문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사업단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을 경우
- 2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
- 3.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때
- 4.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5.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주무부처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직위해제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8조(사업단장 연임) ① 사업단장의 연임 여부는 이사회가 주관하는

평가를 통해 결정한다.

- ② 이사회는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,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③ 평가위원회는 주무부처와 전문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10인 내외로 구성한다.
- ④ 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의 업적과 사업단 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이사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⑥ 이사회는 사업단장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심의·의결하고, 그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⑦ 사업단은 사업단장 평가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평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 및 경비를 지원한다.

제19조(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) ① 사업단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년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잔액(이자 포함)이 있을경우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.

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사용실적을 정산하고, 그 결과를 총괄부처에 보고 하여야 하며, 회수된 정산금액을 주무부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
제4장 과제 기획, 선정, 관리 등 사업단 운영

- 제20조(과제기획 및 공고) ①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스마트팜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.
 - ② 과제의 발굴 및 기획을 위하여 사업단장은 스마트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.
 - ③ 사업단장은 과제기획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④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는 총괄부처에서 실시한다.
- 제21조(과제선정 평가) ① 사업단장은 과제선정 평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과제선정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, 정해진 과제선정 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사업단장은 과제선정을 위해 사전검토,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실시한다.
 - ③ 제2항의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.
 - ④ 과제선정 평가 시 연구계획의 우수성,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, 기대되는 파급효과,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, 사업의 특성, 지원 가능 규모, 국가 과학 기술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⑤ 사업단장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평가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.
 - ⑥ 사업단장은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2조(협약 및 출연금) ① 사업단은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· 평가·관리 등에 대한 위탁 또는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협약을

체결하여야 한다.

-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 후 재정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·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.
- ⑤ 사업단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약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.
- 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기술개발 종료일 3개월 전까지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사업단장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.
- 제23조(사업비 관리 및 사용) ①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,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20조(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), 제24조(연구개발비의 관리), 별표 2 '연구개발비 사용용도'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적용한다.
 - ②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사업비 사용·집행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고 운용할 수 있다.
- 제24조(과제평가) ① 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.

- ②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협약으로 체결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, 사업 성공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단장은 과제평가 기준·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제2항의 성과지표가 본 사업의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.
- ⑤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.
- ⑦ 사업단장은 평가결과를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.
- **제25조(과제 평가결과의 활용)** ① 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제24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및 사업비 규모 등을 결정 해야 한다.
 - ② 사업단장은 제24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.
 - ③ 사업단장은 과제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·운영할 수 있다.
- 제26조(보고서 관리 등)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

연차보고서·단계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 단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.

- 1. 연차보고서: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
- 2. 단계보고서: 각 단계종료일 45일 전
-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평가용 최종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고,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용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 최종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사업단은 과제, 평가위원, 평가결과, 사업비, 성과물, 참여인력 및 장비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 정보시스템이 없는 기간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사업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.
- 제27조(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)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과제에 관하여 사업비 사용실적(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)을 과제의 수행기간 당해연도 종료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단, 단계가 종료되는 경우 정산을 위해 각 단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하여 단계별 정산을 실시하되, 필요시 전 문기관이 운영하는 정산의뢰 회계법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, 담당 회계법인 에게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- ③ 사업단장은 제2항의 단계별 정산 결과를 전문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전문기관은 회수된 정산금(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당집행금액 등 불인정 금액 및 집행잔액 등 포함)을 주무부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- ④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회수된 정산금의 국고 납입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제정·시행할 수 있다.
- ⑤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⑥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26조, 별표 2 '연구개발비 사용용도'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.
- 제28조(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) ①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 기관과의 과제 협약 시 연구성과의 소유권,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 료 징수·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.
 - ② 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·무형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제32조를 적용한다. 다만, 연구개발성과 중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사업단이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사업단장은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.
 -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참여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계약일 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⑤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술실시 의사가 없거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총괄부처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기관에 성과관리를 수행하 도록 할 수 있다.
- ⑥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,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 존·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⑦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동안 매년 1월 31일 까지 별도로 정하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중인 경우 : 협약기간
- 2.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경우 :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
- ⑧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종료된 과제들에 대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 동안 추적조사를 할 수 있다.
- 제29조(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) ①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을 준용한다.
 - ②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세부절차는 총괄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단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.
- 제30조(기술실시계약내용 등 보고)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8 조 제4항에 의하여 기술 실시 사실을 사업단장에게 보고하거나 기술 실시에 관해 사전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한다. 단,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연차별 납부기일까지 제2호 각 목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.

- 1. 기술실시계약 내용 보고시 제출 서류
 - 가. 기술이전계약 통보양식
 - 나. 기술이전계약서 사본
 - 다. 과제협약서 사본
- 2. 매출액 증빙자료
 - 가. 전년도 재무제표
 - 나. 전년도 매출별 계정원장
 - 다. 제품, 상품, 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
 - 라. 기술료관련 매출액명세서
 - 마. 매출 미발생 사유서
 - 바.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-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장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제31조(위반사항에 관한 제재 등) 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혁신법"이라 한다)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사업비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59조, 혁신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.
 - ② 연구개발과제에서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단장은 전문기관 및 주무부처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, 전문기관 및 주무부처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은 주무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부처별로 국고에 납입하고. 제재부가금은 총괄부처에서 국고에 납입한다
- 제32조(사업비의 이월)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(기획평가관리비 제외)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제33조(후속조치)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의 파악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, 연차별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 - ② 사업단 해체 후에는 전문기관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역할을 대신한다. 다만, 사업 종료 후에 사업단장과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단장에게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제34조(지식재산의 관리)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사업화 성과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사업화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제35조(의견청취) ① 이사회,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 및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- ② 사업단장은 제1항 각 위원회의 위원이 제21조제4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됨으로써 이해충돌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36조(경비지급) ① 사업단은 제35조제1항 각 위원회의 위원, 제21조제4항 및 제24조제4항에 의한 평가위원회 위원,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사업단은 과제기획, 마케팅, 라이센싱, 평가, 연구성과 실용화 등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,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7조(기타 준수사항) ① 총괄부처와 이사회는 사업단 현황, 성과, 사업단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- ② 사업단의 업무 중 총괄부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사회 및 운영 위원회 등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.
- ③ 사업단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사업단장은 총괄부처의 승인 후 제3항에 따른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·시행할 때에는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다.

제38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농촌진흥청장,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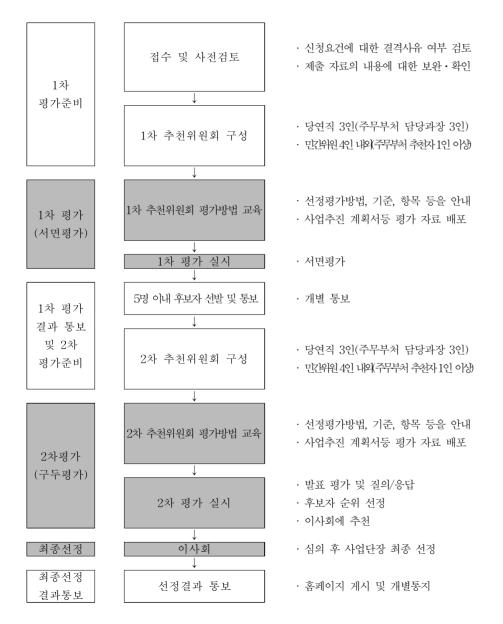
제2조(경과조치)이 규정 시행 전에 진행된 사업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· 운영, 사업단장 선정 등에 관한 조치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 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준비위원회) ① 사업단 설립 이전에 사업단의 구성·설립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해 사업단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- ② 사업단 설립준비위원회는 주무부처 담당 과장, 전문기관 사업관리 본부장, 민간 위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사업단 설립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사업단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
- 2. 사업단 임원 추천 및 사업단장 선정,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
- 3. 사업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 협의·조정에 관한 사항
- 4. 사업 관련 정책 연계성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사업단 설립 및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④ 사업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■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[별표 1]

사업단장의 평가 절차(제13조제2항 관련)



■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[별표 2]

사업단장 선정 평가 지표(제14조제6항 관련)

평가부문	평가항목	배접	평가지표
I. 사업단장 전문성 및 역량 (40점)	- 사업단장 전문성	20	- 해당분야* 전문적 지식 보유여부 * 스마트팜, ICT융복합, 무인자동화, 인공지능 등
	- 사업단장 역량	15	연구 기획 능력연구 관리 능력기술개발 사업화 능력해외 협력 능력
	- 농업분야 이해 및 경력	5	- 농업분야 이해 - 농업부문 경력
Ⅱ. 비전 및 리더십 (20점)	- 비전 제시의 적절성	10	- 비전의 구체성 - 비전의 실현 가능성
	- 리더십	10	- 추진의지 및 적극성 - 리더십 발휘 경험/사례
Ⅲ. 사업 추진 계획 (30점)	- 사업계획 내용 적정성	10	기술 및 시장동향 분석, 전망 분석의 적정성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의 적정성프로젝트 구성 및 운영방안
	- 사업추진전략 적정성	10	- 사업추진 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- 사업비 투자계획 및 활용방안 적정성
	- 연구개발 결과 사업화 방안	10	- 사업화 방안의 적정성
IV. 사업단 운영 및 성과관리 · (10점)	- 사업단 운영계획 적정성	5	- 사업단 운영 및 프로젝트 관리 방안의 적정성
	- 사업단 성과관리계획의 적정성	5	사업단 성과목표 도출계획의 적정성사업단 성과 관리방안의 합리성

^{*} 서면, 발표평가시 동일하게 적용. 평가지표 및 배점은 주무부처간 협의를 거쳐 일부 수정될 수 있음

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절차(제16조제4항 관련)

